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영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21
----------	------

발의연월일 : 2025. 10. 10.

발의의원 : 박영동 의원,

김보경 의원, 신동윤 의원

1. 제안이유

공중화장실로 한정된 기존 조례를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하여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로 변경
- 나. 적용 범위를 공중화장실에서 다중이용시설로 확대(안 제1조~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 등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위해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중이용시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등의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 다중이용시설을 군민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관리대상 시설의 지정)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군민 등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협조)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군민 등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추진하는 군수의 불법촬영 예방 시책에 협

조하여야 한다.

제10조(탐지장비 대여) 군수는 다중이용시설 관리자가 다중이용시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등) ① 군수는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5.10.1. 타법개정, 2025.10.1. 시행)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2023.9.14. 일부개정, 2024.3.15.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4.10.16. 일부개정, 2025.4.17. 시행)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 구축 및 운영 과정에서 비용 발생이 예상됨(안 제4조)
- 기존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불법촬영 예방활동(탐지장비 대여, 점검자 교육, 홍보물 제작·배포 등)의 대상을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함에 따라 예산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안 제10조~제12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기존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의 적용 대상을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여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 점검체계 구축, 탐지장비 대여, 교육 및 홍보 등은 향후 세부 시행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될 사항으로, 대상 시설의 범위 및 사업 내용에 따라 예산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재정 부담을 특정하기 어려움(안 제4조~제12조)

작 성 자

소 속 및 직 위

달성군의회 의원

성 명 (연 락 처)

박 영 동 (☎ 2055)